

# 토지출입금지가처분신청

### 채권자 〇〇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채무자 ◇◇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목적물의 표시

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

### 목적물의 가격

4,127,590원

# 신 청 취 지

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 신 청 이 유

- 2. 그러나 채권자는 위와 같은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 합○○○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차례로 이전된 위

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가 채권자의 진정한 항공 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 승소판결이 선고되고, 항소심과 상 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써 20〇〇. 〇. 〇. 각 말소되고 폐쇄등기가 되었으며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.

- 3. 그런데, 신청외 ◆◆◆는 20○○. ○.경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채무자에게 점유·경작케 하여 채무자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고 있어 그 소유권자인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, 만일지금에 있어서 채무자의 출입을 방치하고 비닐하우스의 설치를 방지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사용권이 침해당하게 되어 결국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,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.
- 4. 한편, 이 사건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,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 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소 명 방 법

1.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소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

1. 소갑 제3호증의 1, 2 판결정본

# 첨 부 서 류

1. 위 소명방법 각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신청인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

# 부동산의 표시

○○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 전 1,000㎡. 끝.

제출법원	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					
	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300조			
	관할하는 지방법원		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(목록 5부정도 첨부)					
불복절차 및 기간	(채권자)					
	·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301조,					
	제281조 제2항)					
	·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( 민사소송법 제444조)					
	(채무자)					
	·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3조), 본안의 제소명령(민사					
	집행법 제301조, 제287조)					
	·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					
	하고 취소 •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. 기처분명령이 발령					
	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					
	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.					
비 용	· 인지액 : ㅇㅇㅇ윈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					
	·송달료 : ○○○원(ངᄛ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		
기 타	·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효력은 그 처에게는 미치지					
	아니하므로 그 처가 이를 무시하고 출입금지 된 밭에 들어가 작업을 한					
	경우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					
	이라고는 할 수 없음(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7도1455 판결).					
	·가처분결정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출입을 금하는 주문의 효력은 당연히					
	같은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					
	(대법원1959. 7. 30. 선고 :	58다551 판결).				

### ※ 집행절차

가처분신청	→ 2~3일후	담보제공명령서 수령(공탁명령)	<del>→</del> 5일내	보증보험사와 지급 보증위탁계약체결 ※ 지참서류등 1. 가처분신청서사본 2. 주민등록표등본 3. 담보제공명령서	<b></b> →
				3. 담모세공명당서 4. 도장	

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(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)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가압류, 가처분